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16
------	------

2021. 04. 26.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02월 05일, 이병도 의원 외 19명

나. 회부일자 : 2021년 02월 0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1.04.2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이병도 의원)

### 1. 주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과 공영도매 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설치되었으나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

시키고 있음.

- 또한, 전국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거래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에도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은 독점적 운영을 통해 큰 이익과 배당을 챙겨 가고 있음.
- 따라서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유통환경에 대응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농안법령 개정을 촉구함.
-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권은 해당 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법 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이양함.
-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농안법령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하고, 자치분권 확대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정할 것을 촉구함.

## 2. 제안이유

-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각 제정되고 설립된 농안법령과 공영도매시장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채, 소비자가 지불하는 농수산물의 가격과 생산자인 농어민이 받는 가격간 괴리가 격차를 수 없이 커졌음.

- 그 원인은 농안법령이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개정이 지연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데 있음.
- 이에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서 국내농가와 공영도매시장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제 체제를 반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현실여건과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해 농안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함.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건의안의 개요

- 건의안은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건전한 경쟁체제와 유통효율화를 도모하게 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개설권자인 단체장에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 권한과 업무규정 승인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하 “농안법” )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임.

#### 나.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

- 1980년대 이전의 농수산물 유통구조는 전통적인 유사도매시장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 )이 공영도매

시장으로 개장(1985. 6. 19)된 이후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가락시장의 거래규모는 2020년 현재 약 237만여톤(하루 7,755톤)으로, 서울시 소요량의 49%,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이 취급하는 총 거래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수산물 유통시장 개방으로 인한 다양한 유통기구의 출현, 산지와 소매 유통체계의 급속한 변화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재배기술 발전과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농산물의 증가는 산지 유통의 여건을 변화시켰고, 이로 인해 가락시장의 거래물량이 2000년 이후 정체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 가락시장 내 5개년별·부류별 거래물량 >

(단위 : 천톤)

연 도 부 류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합 계		1,859	2,432	2,413	2,150	2,264	2,522	2,370
청과	계	1,704	2,241	2,267	2,030	2,148	2,422	2,280
	과일	193	259	327	263	298	356	308
	채소	1,511	1,982	1,940	1,767	1,850	2,066	1,972
수산	계	155	191	146	120	116	100	90
	선어	48	67	54	51	45	33	27
	패류	72	86	65	46	47	43	34
	건어	35	38	27	23	24	24	29

- 이는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도매시장이 유통주체 간 경쟁촉진과 거래방법 다양화 등 유통구조 효율성 확보에 있어 효과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 출하자는 대형구매가 가능한 대형마트 등으로 거래선을 확대하기 위해 외식용, 가공용, 신선농산물 소비용으로 구분해 생산하고 있으나, 가락시장은 이 같은 유통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대형마트, 외식기업 등과의 직거래 유통 증가 등 다원화된 유통경로 역시 도매시장에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가락시장은 ▶거래제도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대응력 강화, ▶물류 기지로서의 역할 증대, ▶신선식품 등 안정적 먹거리 공급,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경쟁우위 등의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함.

#### 다. 유통환경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 국내 최대의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농산물의 수집(도매시장법인)과 분산(중도매인) 주체를 분리하는 경매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경매제도는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였으나, 높은 가격 변동성과 유통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유통단계 축소, ▶상장예외 거래 허용, ▶정가·수의매매, ▶시장도매인 제도 등 새로운 거래제도가 도입되었음.

- 이중 시장도매인제도는 시장도매인(도매상)이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위탁 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로 2000년 농안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 서울시는 2004년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대구 북부시장(수산), 안동시장 등에서 운영 중에 있음.
- 시장도매인제도는 ▶출하자의 선택권 확대, ▶유통단계 축소로 인한 유통비용 절감 및 유통효율화, ▶거래제도 다양화를 통한 도매시장의 효율성 제고, ▶출하자의 안정적인 수취가격 보장 등 긍정적 요소가 있음.
- 반면에 ▶거래과정의 낮은 투명성과 공개성, ▶시장도매인과 출하자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가격 왜곡, ▶경매제도의 가격결정 기능 위축 등의 부정적 요소도 작용하고 있어,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유통인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sup>1)</sup>.

#### < 경매제도와 시장도매인제 장·단점 >

구 분	경 매 제	시장도매인제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의 공정성·투명성 확보</li> <li>◦ 출하주에 대한 대금정산 보장</li> <li>◦ 법인에 대한 효과적 규제 가능</li> <li>◦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 절감</li> <li>◦ 출하자의 선택권 보장</li> <li>◦ 안정적 수취가격 보장</li> <li>◦ 신선도 유지 및 감모율 감소</li> </ul>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거래 존재(기록상장 등)</li> <li>◦ 유통단계 증가 및 비용 증가</li> <li>◦ 가격변동성 심화</li> <li>◦ 독과점과 과도한 수익창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 투명성·공개성 부족</li> <li>◦ 가격결정 혼란 및 수취가격 악화</li> <li>◦ 대금정산 지연 등 폐해</li> <li>◦ 가격결정 기능 위축</li> </ul>

1) 지난해 11월 가락시장 출하자 1,000명을 대상으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의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27명 중 309명(72.4%)이 필요하다에 응답하였음.

-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2020. 11. 26)와 올해(2021. 1. 6) 두 차례에 걸쳐 가락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농안법」 개정을 건의하였음.
    - 이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대립 중에 있으므로 이해관계자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에는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회신하였음.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도매인제는 도매시장의 유통효율화, 경쟁력 강화, 출하선택권 확대, 거래의 투명성·공정성 등에 있어 상반된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므로, 정부와 시장개설자, 유통주체간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도매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라.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지정’과 ‘평가’ 권한 이양
- 건의안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와 도매시장법인<sup>2)</sup>의 지정 등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농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하도록 하고 있음.

---

2) 개설자(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의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수탁 받아 판매를 대행하거나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

- 그러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재지정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관행적으로 재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또한 농안법 제77조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시장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매시장 평가제도는 1992년부터 정부 중앙평가와 개설자인 서울시 자체 평가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었으나, 평가 주체별 평가 결과의 차이, 피평가자의 부담가중,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2014년 중앙평가로 일원화하여 운영되고 있음.
- 하지만 도매시장별 영업 특색 등을 반영해야하는 평가의 특성상 중앙 정부가 전국 도매시장의 개별 특성을 일괄 반영해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도매시장 개설자의 시장관리 동력과 경영 책임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자치분권 확대와 도매시장 개설자의 관리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과 ‘평가’ 권한을 도매 시장 개설자에게 조속히 이양해야 할 것임.

## 마. 업무규정 변경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 사항

- 농안법 제17조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안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할 사항은 도매시장의 명칭·위치 등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거래품목,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관리, 농산물의 안정성 검사, 표준하역비, 정산창구 등 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관한 37개 사항임.
-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령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1) 농림·축·수산물 생산사업의 지원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조성 계획의 수립·조정 4)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조정

- |  |  |
|--|--|
|  | 5) 우량종자 보급의 권장과 안정 공급<br>6) <u>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u><br>(도의 경우는 제외한다)<br>7)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지원<br>8) 축산물 등급제 지도 지원<br>9) 도축장 허가 및 지도 감독<br>10) 경지이용도 제고대책 강구 지도<br>11)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지도 |
|--|--|

- 따라서 농안법과 시행규칙에서 중앙정부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시장개설자의 자치권 확보와 책임 관리 운영 보장을 위해서라도 개정의 시급성이 있음.

## 바. 종합의견

- 전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개장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낙후된 시장 환경과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어 공영도매 시장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조속히 회복할 필요가 있음.
- 건의안은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해 공영도매시장이 지속성장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통주체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을 둘러싼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농안법령 정비를 요구하는 것임.
- 특히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 ·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안법령은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국정과제의 핵심 기조인 자치분권의 확대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 다만, 거래물량 등의 감소로 가락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도매인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장개설자, 유통주체 간 의견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본격 도입에 앞서 사전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임.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216
----------	------

발의년월일 : 2021년 02월 05일  
발의자 : 이병도, 강동길, 김기대,  
김달호, 김인제, 김재형,  
김평남, 김혜련, 노승재,  
문장길, 박기재, 박상구,  
송아량, 양민규, 이상훈,  
이승미, 이정인, 이준형,  
최선, 최정순 의원(20명)

## 1. 주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과 공영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설치되었으나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 또한, 전국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거래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에도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은 독점적 운영을 통해 큰 이익과 배당을 챙겨가고 있음.
- 따라서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유통환경에 대응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함.

-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권은 해당 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법 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이양함.
-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농안법령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하고, 자치분권 확대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정할 것을 촉구 함.

## 2. 제안이유

-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각 제정되고 설립된 농안법령과 공영도매시장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채, 소비자가 지불하는 농수산물의 가격과 생산자인 농어민이 받는 가격간 괴리가 겉잡을 수 없이 커졌음.
- 그 원인은 농안법령이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개정이 지연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데 있음.
- 이에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서 국내농가와 공영도매시장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반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현실여건과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해 농안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 4. 이송처

○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핵심은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공정성 확보에 있다.
- 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영도매시장은 본래의 설립취지가 퇴색되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농수산물 가격과 생산자인 농어민이 받는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
- 실제로 출하자는 농산물의 가격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는데, 정작 시장이나 마트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은 값비싸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 수십 년 동안 되풀이되고 있다.
- 그 원인은 농안법 관련 규정이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개정이 지연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데 더 큰 이유가 있다.
- 최근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농수산물 거래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에도 전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은 높은 당기순이익과 배당 실적을 기록했다.
- 이러한 비정상은 공정하다고 믿었던 경매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몇 개의

도매시장법인들이 가락시장에서 수십년간 거래를 독점하면서 경쟁이 사라지고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 결국 천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가락시장의 판매가격이 전국 시장의 기준 가격이 되고 있으나, 농수산물 거래제도를 통한 유통 단계를 감소시켜 생산자나 출하자, 소비자에게 최종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해 공영도매시장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농어민과 중소상인, 소비자가 보호받는 거래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농안법령을 정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첫째, 가락시장의 유통과정 축소를 통한 도매시장 내 유통비용 절감과 가격변동성 완화 등을 위해 시장도매인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도매시장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조성해 농어민과 중소상인,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둘째, 관행적으로 재지정 해온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평가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셋째,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농안법령은 개설자의 자치권을 제약하고,

자치분권 확대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개정해야 한다.

2021.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